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차이나 A 블루칩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PH)[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차이나 A 블루칩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PH)[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차이나 A 블루칩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PH)[주식]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

4. 판 매 회 사 : 금융투자협회(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ubs-hana.com)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4년 11월 30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4년 12월 24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UBS 자산운용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은 중국 A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해외 주식투자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적격외국기관투자가(이하 “QFII”) 자격을 획득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모펀드에 투자하므로 중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서 송금 및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중국 본토 밖으로 송금 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기간 동안 환매 청구를 할 경우 환매 자금인출이 지연되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9.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 세율, 적용시기,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QFII 가 운용(위탁운용 포함) 하는 펀드에서 발생한 중국 본토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

하나UBS자산운용

자신탁(하나 UBS 차이나 A 블루칩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2014년 11월 16일까지 중국 본토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과세당국이 QFII 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중국 상해 및 심천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 분을 투자하는 상품으로 관련 외화환전 및 해외 송금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외환관리규정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적격외국기관투자가(이하 'QFII'라 한다) 자격을 부여받아 투자신탁재산을 중국 A 주식(중국 상해 또는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중국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차이나 A 블루칩포커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중국주식(A 주식) 70% 이상, 채권 30% 이하
	투자목적	투자신탁은 중국 상해 또는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주식(A주식) 등에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모투자신탁 재산의 7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중국 주식(A 주식)에의 투자비율이 모투자신탁 재산의 70% 이상이 되도록 운용합니다. - 통상적으로 중국 주식(A 주식)에 투자하기 위하여 QFII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모투자신탁 재산의 70%이상이 되도록 운용합니다. - 중국주식 투자는 해외위탁운용회사인 UBS Global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가 위탁 운용합니다. - 이 모투자신탁은 원화-달러화에 대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별도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자투자신탁은 결과적으로 달러화 대비 위안화 변동에 노출됩니다.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중국주식에 투자하여 중국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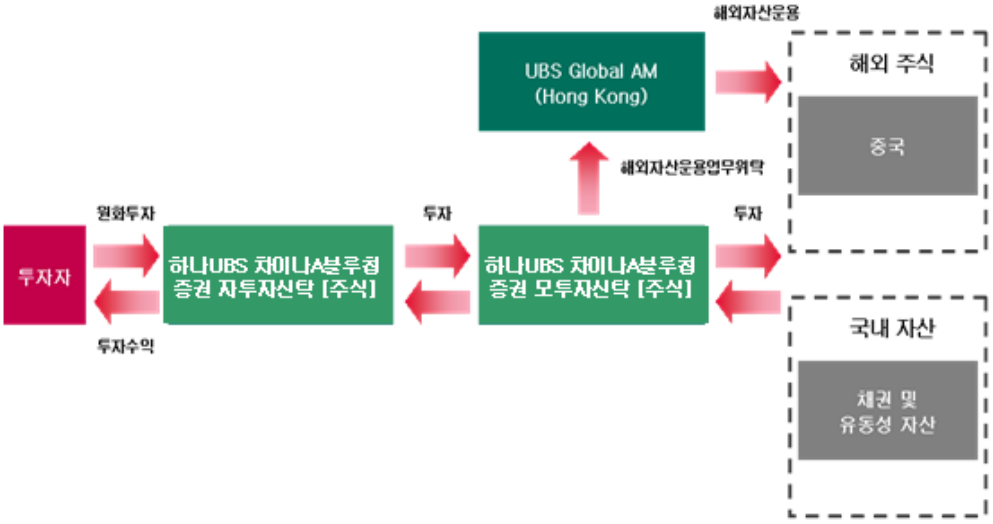

* 중국 A 주식

- 중국 증권거래소의 A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하며 중국 상해 및 심천증권거래소에 각각 A 주식시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중국 A 주식에의 투자는 중국 내국인 및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만 투자가 가능하며, 향후 중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비교지수 : [MSCI China A Index 90%] + [Call 1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모신탁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MSCI China A Index 90%] + [Call 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별도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원화-달러화에 대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 자산은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원화-달러화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합니다. 그러나, 달러화-위안화에 대한 환헤지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달러화-위안화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화-달러화 환헤지의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이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해지가 빈번하며, 해외 자산의 순자산

가치가 변동한다는 제약조건 하에 환헤지가 수행되므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하나UBS 차이나A블루칩포커스증권모(주식)(이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중국 본토의 상해 및 심천 증권거래소에 상장(공모주 포함)된 중국A주식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중국A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경제성장율,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자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모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원-달러 환헤지(목표해지비율 = 외화자산의 90% 수준)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중국시장에 상장된 중국주식에 투자하므로, 달러화-위안화의 환율변동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달러화-위안화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특히, 원화-달러화에 대한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NAV 변동, 선물/선도환 시장 변화, 목표 비율과 실제비율과의 차이, 환헤지 시행 수준으로 인한 환율 변동 관련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국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중국 상해 및 심천거래소에 상장(공모주 포함)된 중국A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중국 증권 시장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이머징시장에 대한 투자위험과 중국시장의 특유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중국의 정부정책, 재정정책, 금리, 인플레이션, 투자심리, 금융시장의 유동성, 주가의 변동성과 같은 요소들은 모투자신탁의 가치 및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장에 비해 합산한 총 시장가치와 투자가능한 주식 수의 측면에서 중국A주식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가격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제위험	중국 재무성(Ministry of Finance)이 2014년 11월 14일에 「과세 2014-79호 고시」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의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일시적 면세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모투자신탁은 동 중국 재무성 고시를 바탕으로 2014년 11월 17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준비금 유보 및 적립을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향후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중국 정부

	의 과세 방침 관련 추가 고시가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現 중국 세제 또는 규정에 의하면, 이 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이 중국 內 설정(Permanent Establishment)되지 않는 한, 중국 세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QFII Quota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중국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중국세금과 관련한 비용/의무는 모두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한 중국A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 세율, 적용시기, 소급과세 등은 현재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중국 과세당국이 QFII가 운용(위탁운용 포함)하는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중국A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급과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투자신탁은 2014년 11월 16일까지 중국본토 주식(중국 A주 및 B주) 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향후 중국과세당국이 QFII에 대한 중국A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중국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납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과세당국이 QFII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 A Share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모투자신탁 재산에 환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과세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투자신탁재산의 환입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이 모투자신탁재산에 환입되기 이전에 환매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준비금 환입에 따른 차액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며, 환매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결정 할 경우,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을 세금납부(과거, 현재 및 미래 발생 분 포함)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과세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분(즉, 실제 부과된 또는 부과될 세금 금액과 과세준비금의 차이)만큼의 금액을 해당 시점의 모투자신탁재산에서 추가적으로 차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신의 잔존수익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잔존수익자가 부담할 위험이 있는 추가적인 과세대금은 모투자신탁에서 유보 및 적립한 과세준비금에 상관없이 중국 과세 당국에서 QFII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최종적인 과세금액은 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 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해외적격기관투자가(QFII) 위험	1) QFII 위험 투자자들은 QFII의 준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국A주식 및 관련 QFII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여타 금융상품에 대한 QFII의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제한, 최소투자보유기간

	및 원리금의 송금에 대한 규제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A주식 및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역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2) QFII Regulation 위험 모투자신탁은 중국 당국이 정한 QFII 규정에 따라 중국 외환관리국이 할당한 투자한도 범위 이내에서 중국A주식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중국으로의 송금과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금의 회수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내 QFII의 투자, 본국 송금 및 통화 환전을 규율하는 QFII 법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라, 이러한 법규의 적용과 해석은 상대적으로 아직 시험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들의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3) QFII 및 QFII 투자한도(Quota) 위험 중국의 현행 규정상 외국투자자들은 중국에서 QFII지위를 취득한 기관들을 통해 A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의 QFII지위를 통해 중국A주식에 직접 투자합니다. 따라서, 만약 집합투자업자가 QFII자격을 잃거나, 만료 또는 박탈되거나, QFII투자한도가 축소되거나 철회될 경우, 모투자신탁은 A주식 및 QFII적격증권에 대한 직접투자가 불가능해 지거나,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의 청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QFII Quota에 따른 설정/환매위험 QFII로서 중국A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초 투자자금 규모가 미화2천만달러(이하 “최소투자금액”)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모집금액이 최소투자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중국A주에 대한 투자가 지연될 수 있으며, 최종 모집금액이 최소투자금액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나 투자자금원본이 환매로 인해 미화2천만달러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령 및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운용도중에 최소투자규모를 유지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계획된 운용전략 이행을 위해 투자자의 중도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투자신탁은 중국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Quota) 내에서 중국A주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규모가 일정수준에 이를 경우, 추가설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지급 연기 위험	중국외환관리국에 따르면, QFII 투자자금에 대한 다수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외환관리국은 QFII 투자자금에 대하여 중국A주식에 최초로 투자를 시작한 이후 개방형 펀드로 중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서 송금 및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송금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신탁계약서상 기재된 환매대금 지급일정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환매대금지급이 연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요 송금규제정책으로 인한 환매대금 지급연기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투자자금 회수의 제한기간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투자한도(Quota) 전액이 중국본토에 투자된 시점 또는 투자한도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부터, 3개월간(동 기간은 중국 정부 및/또는 감독당국의 정책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은 중국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금 회수 제한기간의 해제시점까지 환매대금의 지급연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상기 ①의 기간 이후에도 주 1회로 해외 송금제한 QFII 의 투자자금(이익금 포함)의 해외송금은 주 1 회로 제한되고 있어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과의 괴리로 환매대금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③월간 송금한도액 제한 월간 송금한도액은 전년말 모투자신탁의 중국(홍콩제외) 투자자산의 20%로 제한되며 월간 송금한도액을 초과하여 환매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송금한도액을 충족하는 날까지 환매대금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④또한 향후에도 중국당국의 해외송금 규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환매연기위험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여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중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있고, 달러화-위안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나, 혼합형 투자기구 등 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중국 경제여건 변화와 중국 주식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중국 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4.11.30 일 기준)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정보영	1983	차장	25개	2,502억	- 버지니아 주립대 경영학 학사 - 펀드 운용, 시장조사/분석 8년 - (현)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팀
박수범	1985	대리	19개	936억	- 연세대 경영학과 - 해외조사 및 분석 3년 - (현)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팀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나. 모투자신탁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성 명	소속 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Bin Shi	Global Equity 운용팀	Asia (ex-Japan) Equity Portfolio Manager and Research Analyst	16,414 억원	- CFA - 투자 관련 경력 15년 - 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운용팀의 일원으로써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

6. 투자실적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신규펀드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C1, C2, C3, C4, C-F, C-E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이내㈜	납입금액의 0.5%이내㈜	-	판매시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환매시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이내(종류 A-E 는 0.5% 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율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F	
집합투자업자보수	0.85%	0.85%	0.85%	0.85%	0.85%	0.85%	0.85%	0.85%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70%	0.35%	1.40%	1.00%	0.90%	0.70%	0.50%	0.03%	
신탁업자보수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일반사무관리보수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보수합계	1.63%	1.28%	2.33%	1.93%	1.83%	1.63%	1.43%	0.96%	
기타비용[주1)]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주2)]	1.63%	1.28%	2.33%	1.93%	1.83%	1.63%	1.43%	0.96%	
증권거래비용[주4)]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단위: 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265,360	621,299	1,013,721	2,179,885
종류 C	238,794	653,257	1,049,696	2,227,797
종류 C-E	146,556	462,017	809,813	1,843,362
종류 C-F	98,387	310,165	543,651	1,237,502
종류A-E	181,183	463,554	774,867	1,700,00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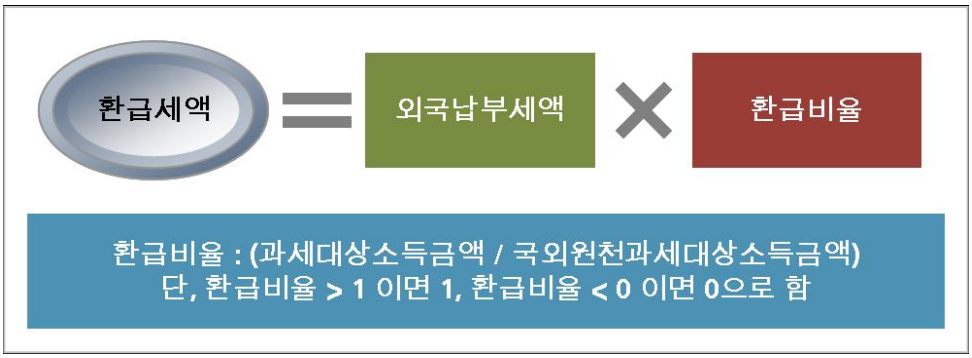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라. 중국 소득세 과세 가능성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로 중국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며, 중국 본토 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 에 대한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 세율, 적용시기,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만일 중국 과세당국이 QFII가 운용(위탁운용 포함) 하는 펀드에서 발생한 중국 본토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결정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잔존수익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급과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은 2014년 11월 16일까지 중국 본토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 과세준비금은 매매차익의 경우 매매차익금액의 10%,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의 경우 각 종목별 평가차익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향후 중국과세당국이 QFII에 대한 중국 본토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소급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중국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납부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집합투자업자는 과세준비금 비율을 필요에 의해 조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세당국이 QFII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 A Share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모투자신탁 재산에 환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 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과세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투자신탁재산에의 환입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이 모투자신탁 재산에 환입되기 이전에 환매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준비금 환입에 따른 차액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며, 환매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결정 할 경우,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을 세금납부(과거, 현재 및 미래 발생 분 포함)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과세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분(즉, 실제 부과된 또는 부과될 세금 금액과 과세준비금의 차이)만큼의 금액을 해당 시점의 모투자신탁 재산에서 추가적으로 차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신탁의 잔존수익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잔존수익자가 부담할 위험이 있는 추가적인 과세대금은 모투자신탁에서 유보 및 적립한 과세준비금에 상관없이 중국 과세 당국에서 QFII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최종적인 과세금액은 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 보다 클 수 있습니다.

중국 재무성(Ministry of Finance)이 2014년 11월 14일에 「과세 2014-79호 고시」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의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일시적 면세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모투자신탁은 동 중국 재무성 고시를 바탕으로 2014년 11월 17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준비금 유보 및 적립을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향후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세 방침 관련 추가 고시가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마.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

	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A-E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투자자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투자자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투자자
종류 C-E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종류 C-F	기관 및 법인 전용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T+2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2일	T+7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3일	T+8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위의 환매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수시공시에 준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① 중국 당국의 외환통제 등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제한이 발생할 경우: 이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지급

② 투자신탁의 당월 환매대금지급총액이 중국 당국이 정한 월간 송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월간 송금한도액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수익자의 환매청구 일자를 기준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며, 월간 송금한도액 초과가 발생한 당일에는 환매대금총액 대비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의 환매대금 비중으로 송금 한도액을 안분하여 해당 환매대금지급일에 지급. 또한 월간 송금 한도액을 초과한 환매대금에 대해서는 이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 지급. 다만 차기 환매대금 지급 가능일에도 월간 송금 한도액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송금 한도액을 충족하는 날까지 순연하여 적용

※ 집합투자업자는 중국본토 시장의 휴무 등 중국본토 시장에서 환매대금 마련을 위한 주식매매 등이 불가능 하거나, 공정기준가격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본토 주식시장의 휴무일부터 해당 휴무일의 마지막 날까지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요약 재무정보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